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65
----------	------------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상위 법률명과 관련 조문인용의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바둑진흥법」을 「바둑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안 제9조 조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포상 조례」”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둑지도자”란 「<u>바둑진흥법</u>」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u>바둑진흥법</u>」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u>바둑진흥법</u>」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제9조(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u>서울특별시 포상 조례</u>」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둑지도자”란 「<u>바둑 진흥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u>바둑 진흥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u>바둑 진흥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제9조(표창)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u>서울특별시 표창 조례</u>」에 따른다.</p>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의 교육·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4.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 사업
5. 바둑 국제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락처	